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15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2. 5. 18.

판결 선고2022. 8.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0. 5. 접수 제6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D의 누나로서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1) D는 2018. 11. 10.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차전1613호로 D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11. 20. 'D는 원고에게 8,916,629원 및 그 중 1,458,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6%, 2,057,676원에 대하여는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5,182,13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3. 3. 확정되었다.

2)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액은 2021. 10. 1. 기준으로 9,640,613원(=원금 8,697,806원 + 이자, 수수료, 연체료 등 합계 942,807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D는 2020. 9.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7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0. 5. 접수 제698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8,697,806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9. 29.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¹⁾, 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안동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여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D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가람

별지

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할 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참조), 그것이 반드시 사해행위 당시에 이행기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